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215
------	------

2023.09.1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서울 흥릉 강소 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2020.8.28./2022.10.26. (개정)] 하였음

- 이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사 무 명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출연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출연의 필요성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성장’ 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비’ 지원 필요

○ 주요사업 내용

- 특구 내 기술 핵심기관(연구소·대학)이 개발 보유한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단계별 임상시험 및 인허가, 제품개발 등 기업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

○ 출연대상 기관 개요

- 기 관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05. 9월 법인설립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조 직 : 10본부(11실, 16팀), 감사 1부 1팀 / 정원 170명

○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00,000천원
- 산출근거 :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2,000백만원)의 40%이상 매칭
※ 과기정통부 지방비 매칭 비율 통보(* 21.8.26.)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출 연 금	1,800,000	900,000	900,000	미정

※ 사업기간 2021~2025년, 총사업비 216억 원(국비 160, 지방비 56)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에 2024년 출연금을 배정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됨.

나.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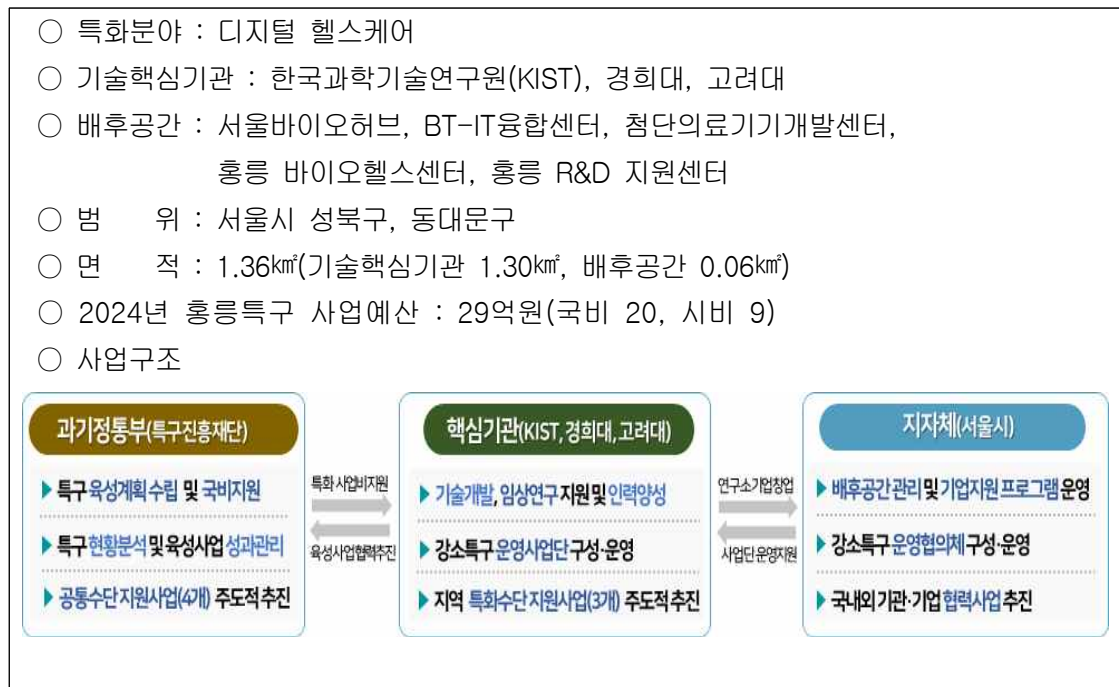
- 홍릉특구¹⁾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의료 관련 연구 기관 및 산업 인프라가 밀집한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2020.8.)하면서 조성됨.
- 참고로 연구개발특구는 지역내 산·학·연 R&D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사업화와 창업지원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 공공기관 중 R&D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유치 등을 위한 2km² 이내의 소규모 배후공간을 지정하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의 사업 구조는 먼저 과기부에서 육성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면 기술핵심기관²⁾이 기술개발과 연구,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며,

1) 홍릉 지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중심병원인 고려대의료원, 양·한방 융합 의료기관인 경희대의료원이 자생적으로 집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2020.8.)되어 지역 내 산·학·연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 관련 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서울시는 배후공간³⁾ 관리와 입주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구조임.

- 한편 특구진흥재단은 홍릉특구 등의 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설립된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 홍릉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KIST, 경희대, 고려대)의 연구역량을 활용한 기술 성장지원, ▶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임상시험, 인·허가, 제품개발 및 글로벌 진출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함.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2) 기술핵심기관 : KIST, 고려대, 경희대이며, 공공연구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타 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4개 유형이 있음.

3) 배후공간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 예정지 또는 개발 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임.



- 지난해의 경우 홍릉특구에는 국비 20억원 · 시비 9억원 등 총 29억원이 출연되었고, 기술이전(26건), 연구소 기업 설립(13개), 일자리 창출(167명) 등 6개의 성과지표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2021년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과평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업 목표의 축소 설정은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적이 2022년 출연 동의안 심사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된바 있음.

<홍릉 강소특구 사업 성과목표 및 실적>

성과지표	'21년 목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22년 실적	'23년 목표
기술이전	20건	27건	13건	26건	17건
연구소기업설립	7개	12개	5개	13개	6개

신규창업건수	10건	42건	7건	17건	9건
매출액	45억원	67억원	32억원	81억원	52억원
일자리 창출	60명	157명	43명	167명	35명
투자연계	5억원	138억원	10억원	229억원	20억원

다. 특구진흥재단 출연 적정성

- 강소특구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⁴⁾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⁵⁾에 근거하여, 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육성사업(기술상용화지원)을 추진하는 것임.
- 그리고 이에 따라 특구진흥재단은 2024년도 국비 20억원에 대한 서울시 분담금 9억원⁶⁾을 요청한 것임.
- 과기부의 요청과 법적 근거에 따라 강소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의 사업재원 분담 출연은 적법하고 타당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정산보고서 최종본의 제출 누락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4)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6)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제5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의 국비 총액대비 지방비 20% 이상을 사업 재원으로 분담해야함.

- 정산보고서는 기술핵심기관(KIST)에서 지방비 사용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구진흥재단은 홍콩특구를 포함한 전국 특구의 정산 검토보고서를 일괄 심사하여 9월 중 각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
- 그러나 서울시는 해마다 9월경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정산보고서 최종본을 첨부하지 못해 기술핵심기관에서 특구재단에 제출한 정산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왔음.
- 이는 특구재단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시의회 심사 후에 통보받게 되므로 시의회의 정확한 안건 심사를 저해할 수 있는바, 서울시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최종 정산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첨부될 수 있도록 동의안 제출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215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2020.8.28./2022.10.26. (개정)) 하였음
- 나. 이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출연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나. 사무명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다. 출연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제58조의2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라. 출연의 필요성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비' 지원 필요

마. 주요사업 내용

- 특구 내 기술 핵심기관(연구소·대학)이 개발 보유한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단계별 임상시험 및 인허가, 제품개발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05. 9월 법인설립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조직 : 10본부(11실, 16팀), 감사 1부 1팀 / 정원 170명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00,000천원
- 산출근거 :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2,000백만원)의 40%이상 매칭
 - ※ 과기정통부 지방비 매칭 비율 통보('21.8.26.)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출연금	1,800,000	900,000	900,000	미정

※ 사업기간 2021~2025년, 총사업비 216억 원(국비 160, 지방비 5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바이오AI산업과 특구기획팀 이주은 (☎ 2133-8742)